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사노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강화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4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경사노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강화(안 제20조)	2

I. 제안경위

2025년 4월 15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1. 경사노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강화(안 제20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되, 이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임.

또한 경사노위로 하여금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 ----- ----- <u>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 3 –

	원 방법, 절차 및 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경사노위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①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②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③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④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²⁾하고 있음.

한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³⁾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0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①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의제 검토
2.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정협회의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⁴⁾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50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회의가 설치되어 있음.

< 지역노사민정협회의 설치 현황 >

(단위 : 개소)

구분(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역	17	17	17	17	17	17	17
기초	135	138	141	147	147	149	150
합계	152	155	158	164	164	166	167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그러나 현행법 상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장의 관심도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회의별 활동수준의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회의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결하기 위해 중앙단위의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⁵⁾

또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사회적대화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역단위 사회적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간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경사노위로 하여금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사노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역간 산업화 격차, 지역소멸이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노동 공급과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지역 이해관계자의 현안 이슈를 주제로 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⁷⁾ 개정안과 같이 경사노위로

5) 이상민·노광표·김주일·채준호·박용철,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9.

6) 신동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7) 김주일,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요인과 과제」, 『노동연구』 제41집, 2020.

하여금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경사노위가 공동으로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67개소의 지자체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협의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⁸⁾이 같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⁹⁾가 지역의 인력양성 관련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지역고용노

8) 자세한 내용은 <참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원사업 개요 참조

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정책 관련 협의·심의 기능을 하는 거버넌스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¹⁰⁾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지원 기능 강화 및 별도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역할 조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의 특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¹¹⁾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정부가 관련 예산 등을 지원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와 경사노위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의 특성과 역량을 감안하여 양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

10) 김주일,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요인과 과제」, 『노동연구』 제41집, 2020.

11) 이상민·노광표·김주일·채준호·박용철,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9. : 동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부의 의견이 이와 같이 제시되었음.

참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원사업 개요

□ (개념) 지자체가 노사 및 주민대표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 (설치 현황)

구분(개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역	17	17	17	17	17	17	~17
기초	135	138	141	147	147	149	150
합계	152	155	158	164	164	166	167

□ (근거)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지원사업 내용) 노사민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 지자체 지원

○ (예산지원) '24년 56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40)에 대해 1,160백만원 지원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사업수행 지자체수	39	39	42	55	66	77	79	80	80	65	65	63	63	68	56
지원예산	1,760	1,760	2,210	2,411	2,158	2,158	2,000	1,900	1,630	1,630	1,556	1,476	1,402	1,402	1,160